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71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김현정·박홍배·이기헌

부승찬 • 전재수 • 손명수

이개호 • 정태호 • 김기표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삭제 등).

법률 제 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第4條 <u>各號</u>의 1"을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第4條 <u>各號</u>의 1"을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條(缺格事由) 다음 각 호의 어	제4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公認	
會計士가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u><삭 제></u>
아니한 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第8條(登錄拒否) ① 금융위원회	제8조(등록거부) ①
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	
여 登錄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거부하여야 한다.	
1. <u>第4條 各號의 1</u> 에 해당하는	1.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경우	<u>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9條(登錄取消) ① 第7條의 規定	제9조(등록취소) ①
에 의하여 登錄된 公認會計士	
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公	
認會計士의 登錄을 取消한다.	
1. <u>第4條 各號의 1</u> 에 해당하게	1.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된 때	<u>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